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92
------------	-------

제출년월일 : 2015. 10.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개정이유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내용과 용어를 조례에 반영하고,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동일 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은 삭제하여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 “가정복지 증진” ⇒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
- “보육시설” ⇒ “어린이집”
- “보육시설 종사자”, “종사자” ⇒ “보육교직원”
- “보육시설의 장” ⇒ “어린이집의 원장”
- “시설” ⇒ “기관” 또는 “어린이집”
- “보육정보센터” ⇒ “육아종합지원센터”

나.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구성비율 설정(안 제5조제2항)

- 보육 전문가 ⇒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 ⇒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 ⇒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 관계공무원 ⇒ 관계 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다. 상위법령에 이미 명시되어 조례에 동일내용이 불필요하게 중복되어 있는 조항 삭제(안 제10조제5항, 안 제5장)

라. 변경된 보육정책위원회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을 상위법령에 나열된 내용에 따르도록 간단하게 수정(안 제6조, 제14조)

마.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면제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에 따른 내용 반영 및 면제대상 추가(안 제13조제5항)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신설)

바.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 변경(안 제22조1항)

-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사. 서울특별시 보육지침에 따라 2007. 1. 1. 이후 방과후 어린이집 신규 확충이 중단되고 기존 시설에만 운영비가 지원됨에 따라 신규 시설 설치 관련 조항 삭제(안 제6장)

아. 뜻이 모호하거나 어려운 용어, 일반적으로 쓰이는 않는 용어, 문맥상 어울리지 않는 용어 등은 쉽고 적절한 용어로 변경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조문 등은 문맥에 맞추어 쉽고 명확하게 재설정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없음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 라. 규제여부 : 구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에 해당
되지 않음

4. 기타사항

- 가. 입법예고 : 2015. 8. 27. ~ 9. 16. (제출된 의견 없음)
- 나.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자율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다.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 분석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의결(2015. 10. 07.)
- 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 바. 신·구조문 대비표 1부.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유아 및 아동의”를 “영유아”로, “가정복지증진”을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 증진”으로 한다.

제2조제3호 중 ““보육시설”이란”을 ““어린이집”이란”으로, “시설”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란 보육시설”을 ““보육교직원”이란 어린이집”으로, “상담 그 밖에 보육시설”을 “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으로, “자로서 보육시설의 장”을 “사람으로서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직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1항 중 “보육시설종사자와”를 “보육교직원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 및 아동을”을 “영유아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하는 자로 한다”를 “임명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제2항 각 호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제1항 중 “1차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전임자”를 “전임위원 임기”로 한다.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영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제11조 본문 중 “위원에 대하여는”을 “위원에게는”으로 한다.

제3장의 제목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법 제51조의2 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재위탁”을 “한 차례만 재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하는 자”를 “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수급자”를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제13조제6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제1항 중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에서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다.

제15조제3항 본문 중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으로,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를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6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17조 중 “보육정보센터”를 “육아종합지원센터”로 한다.

제4장의 제목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을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으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구립 보육시설의 설치)”를 “(구립어린이집의 설치)”로 하고, 제18조 중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으로, “시설 수”를 “어린이집 수”로, “장애아 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장애아통합 어린이집,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등”으로 한다.

제19조의 제목 “(구립 보육시설의 명칭)”을 “(구립어린이집의 명칭)”으로 하고, 제19조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전단 중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립 보육시설”을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대하여는”을 “대하여”로, “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립 보육시설”을 “구립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를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로 한다.

제2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잔여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제2항 중 “재위탁할 수 있다”를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로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임면은 개인위탁이 아닌 경우 수탁자가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의 제목 “(종사자의 자격)”을 “(보육교직원의 자격)”으로 하고, 제24조 중 “구립 보육시설의 장”을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영 제21조”를 “영 제21조 관련 별표 1”로, “해당하는 자”를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을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기준 및 종사자”를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6조제1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중 “시설 운영실태”를 “어린이집 운영 실태”로, “감사를”을 “점검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감사”를 “점검”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로, “보육시설 운영의”를 “어린이집의 운영”으로 한다.

제5장(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6장(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을 삭제한다.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에 대하여”를 “어린이집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제35조제1항제4호 중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법 제27조에 따른 연장보육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제35조 제1항 제8호 중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를 “보육활성화”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를 “어린이집에 제1항에 따른”으로,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는 기관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제36조의 제목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을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으로 하고, 제36조 중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의”로, “처우개선 지원”을 “처우개선 지원”으로, “종사자들”을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에 대하여는”을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시설운영”을 “어린이집 운영”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목적외”를 “목적 외”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허위”를 “허위 또는”으로 한다.

제38조 중 “보육시설장 및 단체대표자”를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단체 대표자”로 한다.

제39조 중 “보육시설 및 종사자”를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으로, “모범보육시설 또는 우수 종사자”를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으로 한다.

제40조 중 “영유아보육법령”을 “「영유아보육법」”으로,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제8장의 제목 “보 칙”을 “보칙”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22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이 조례 시행 전에 최초로 위탁하여 운영 중인 구립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 후 한 차례 재위탁할 수 있고, 이 조례 시행 전에 한 차례 이상 재위탁한 어린이집은 위탁기간 만료 후 재위탁할 수 없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 (제13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구 분	용 도	단 위	상 한 액 (단위:원)	비 고
사 용 료	영유아놀이프로그램	월	30,000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무료	
상 담 료	각종 치료 상담	회	30,000	

2. 검사료

구분	검사명	이용료	비고
	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사 (K-SSRSP) 아동발달선별검사 (K-CDI) 영아발달선별검사 (DEP)	무료	선별/발달 선별/발달 선별/발달
영유아용	영·유아언어발달검사 (SELSI) 수용·표현 어휘력 검사 (REVLT)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PRES) 우리말 조음·음운평가 (U-TAP) 아동용 발음평가 (APAC)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맥아더-베이츠의사소통발달평가 (K-M-B CDI) 파라다이스 유창성검사 (P-FA)	30,000원	언어

○ 비 고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구민문화체육센터, 어린이 영어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등)2개소 이상의 사용료 등을 산출평균한 금액을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영유아 보육법」 등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의 <u>영유아 및 아동의</u> 보호와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보호자의 사회·경제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u>가정복지증진</u> 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영유아</u> ----- ----- <u>영유아 및 가정의</u> <u>복지 증진</u>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 <u>보육시설</u> ” 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u>시설</u> 을 말한다.	3. “ <u>어린이집</u> ” 이란 ----- ----- - <u>기관</u>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 <u>보육시설 종사자</u> ”란 <u>보육시설</u> 에서 영유아의 보육, 건강 관리 및 보호자와의 <u>상담</u> 그 밖에 <u>보육시설</u> 의 관리·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u>자로서</u> <u>보육시설</u> 의 <u>장</u> 및 <u>보육교사</u> 와 그 밖의 <u>종사자</u> 를 말한다.	5. “ <u>보육교직원</u> ”이란 <u>어린이집</u> ----- ----- <u>상담, 그 밖에 어린이집</u> ----- ----- - <u>사람으로</u> <u>서 어린이집의 원장</u> ----- ----- <u>직원을</u> -----.
6. “ <u>방과 후 보육</u> ” 이란 맞벌 이 부부의 자녀 등 <u>방과 후 보호</u> 가 필요한 초등학교 아동을	<삭 제>

중심으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보호자 및 보육시설종사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은 영유아 및 아동을 건전하게 보육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보육 전문가

2.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3.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4. 관계공무원

<신설>

제3조(책임) ① -----

----- 보육교직원과 -----
-----.

② ----- 영유아를 -----
-----.

제5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해당하는 사람 -----
----- 임명한다.

1. 보육전문가 :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2. 어린이집의 원장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3.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4. 관계공무원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③ · ④ (생 략)

제6조(기능) 위원회는 구의 보육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
2.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공립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
4. 보육시설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
5. 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정지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
6.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취소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위원회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 각 호와 제13조에 따른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 · 위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
----- 한 차례
만 -----
----- 전임위원 임기-----
-----.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해촉)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구청장이 해촉할 수 있다.

1. · 2. (생 략)

<신 설>

제10조(회의) ① (생 략)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집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 ④ (생 략)

⑤ 위원은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장 보육정보센터

제8조(위원의 해촉) -----

-----.

1. · 2. (현행과 같음)

3. 영 제10조의2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0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이상-----

-----.

③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1조(위원의 수당 등) -----
----- 위원에게는

-----.

-----.

제3장 육아종합지원센터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구청장은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보센터(이하 “보육정보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보육정보센터를 보육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 및 장비를 갖춘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계약만료 시 업무실적 등을 평가 후 재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시설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별표에서 정한 사용료 등을 징수 할 수 있다.

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제13조(설치 및 운영) ① -----

-----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이하 “육아종합지원센터”라 한다) -----
-----.

② -----
-----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③ -----

----- 한 차례만 재위탁 -----.

-----.

④ -----
----- 하는 사람-----

---.

⑤ -----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 3. (생 략)

4.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신 설>

⑥ 보육정보센터의 관리 · 운영 수탁자가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기능) 보육정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육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

2. 보육프로그램 및 교재 · 교구의 제공 또는 대여

3. 보육시설종사자에 대한 상담 및 구인 · 구직 정보의 제공

4. 보육시설 이용자에 대한 안내 · 상담 및 교육

----- 해당하는 사람-----
-----.

1. -----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2.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이용자

5.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⑥ 육아종합지원센터 -----

---.

제14조(기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 제13조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5.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에 대한 정보의 제공
6. 육아지원에 대한 정보의 제공
7. 구민의 보육 수요 및 욕구 조사, 보육시설 이용실태 조사
8. 그 밖에 보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구성) ① 보육정보센터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과 보육에 관한 정보제공 및 상담업무 등을 담당하는 보육전문요원을 두고,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산원, 영양사, 간호사 등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장은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체의 대표가 임면한다.

제15조(구성) ①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 ----- 정보를 제공하는 보육전문요원 및 보육교직원의 정서적·심리적 상담 등의 업무를 하는 상담전문요원 등 ----- .

②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운영할 경우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은 수탁기관에서 공개 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기관의 대표가 임면한

③ 보육전문요원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보육정보센터를 영 제16조에 따라 위탁·운영할 경우에 보육전문요원 및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정보센터의 장이 임면 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보육정보센터의 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지도·감독)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보육정보센터의 운영사항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확인·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비용) 보육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 또는 서울특별시의 보조금과 구비로 충당한다.

제4장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구립 보육시설의 설치) 구청장은 구립보육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보육수요와 시설수를 감안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 등

다.

③ ----- 해당하는 사람 -----
-----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법 제51조의2제1항-----
----- 직원은 육아종합지원센터 -----
-----.

④ 육아종합지원센터 -----
-----.
제16조(지도·감독) -----
----- 육아종합지원센터-----
-----.

제17조(비용) 육아종합지원센터 -----

-----.

제4장 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제18조(구립어린이집의 설치) 구청장이 구립어린이집 -----
----- 어린이집 수 -----
-----.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장애인보육시설과 야간 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9조(구립 보육시설의 명칭) 구가 설치하는 구립보육시설의 명칭은 “00어린이집”으로 한다.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에 따라 설치된 공립보육시설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② 구립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위탁대상자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를 위탁운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로 지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립보육시설

장애인통합어린이집, 장애인전문어린이집, 시간연장형어린이집 등 -----.

제19조(구립어린이집의 명칭) ----- 구립어린이집 -----.

제20조(위탁계약 등) ① ----- ---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구립어린이집 -----.

② 구립어린이집 -----.

③ ----- 구립어린이집

을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구청장은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 한 사항을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구청장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구립 보육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 수탁자 모집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모집에 관한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 보육시설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평가 결과 운영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기간 만료

----- 대하여 -----
----- 구립어린이집-----

-----.

제21조(수탁자 모집) ① -----
----- 구립어린
이집 -----

-----.

② -----
----- 등은 시행규칙
제24조 및 제24조의2에 따른다.

제22조(위탁기간) ① 구립어린이
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단, 원장의 임기연장이 5년 미
만인 경우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

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할 수 있다.

제23조(종사자 임면) 구립 보육시설의 장의 임면은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수탁자가 임면하고,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종사자의 자격) 구립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는 영 제21조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임명하여야 한다.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구립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과 구와 체결한 위·수탁 약정서를 준수하여야 하고 그 밖의 위탁·운영에 관하여 구청장이 감사 및 점검 결과 지도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한 차례에 한정하여 재위탁할 수 있으며, 재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한다.

제23조(보육교직원 임면) 구립어린이집의 원장의 임면은 개인위탁이 아닌 경우 수탁자가 공개모집하고,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수탁자의 대표가 임면한다. 그 밖의 종사자는 보육시설의 장의 제청으로 수탁자가 임면하되, 그 결과를 자체 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보육교직원의 자격) 구립어린이집의 원장 ----- 영 제21조 관련 별표 1 ----- 해당하는 사람 -----

제25조(수탁자의 의무) ① -----
-- 구립어린이집을 운영함에 있어 관계 법령 -----

--.

② 수탁자는 아동의 보육에 지원이 없도록 관계 규정에서 정한 시설기준 및 종사자 인원을 확보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대상자가 우선적으로 보육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 ⑩ (생략)

제2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으며, 공유재산을 무상대여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

제2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의 시설 운영실태에 대하여 매년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감사 결과 수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적절한 시

② -----

어린이집 기준 및 보육교직원 -
-----.

③ -----
----- 어린이집
-----.

④ ~ ⑩ (현행과 같음)

제26조(지원 및 비용부담) ① ---
----- 어린이집

-----.

② ----- 어린이집 -----
-----.

제27조(지도감독) ① -----
----- 어린이집 운영 실태-----
----- 점검을 -----

-----.

② ----- 점검

-----.

정조치를 하고 그 이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8조(위탁의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육시설 운영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제5장 보육시설운영위원회

제29조(설치) ① 보육시설의 장은 보육시설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실정과 특성에 맞는 보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육시설에 보육시설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보육시설과 보육정원 40명 이상 보육시설은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제30조(구성) ① 운영위원회는 지역사회인사, 학부모 대표, 보육시설의 장, 보육교사 대표를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육

제28조(위탁의 취소) ----- 수탁자가 시행규칙 제25조 ----- 어린이집의 운영 -----.

<삭 제>

시설종사자가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31조(기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보육시설 운영 규정의 제 ·

개정에 관한 사항

2. 보육시설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영유아의 건강 · 영양 및 안
전에 관한 사항

4. 보육시간, 보육과정의 운영
방법 등 보육시설의 운영에 관
한 사항

5. 그 밖에 보육시설 운영에 대
한 제안 및 건의사항

제6장 방과 후 보육시설의 설치 및
운영

제32조(연장보육) 보육시설의 장
은 필요한 경우 법 제27조에 따
라 만 12세까지 연장하여 보육
할 수 있다.

제33조(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시설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우선적으
로 설치하되, 기존의 영유아 보
육시설, 공공기관, 「사회복지

<삭 제>

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비영리 민간단체 운영시설 등을 증·개축 또는 개수·보수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34조(방과 후 보육시설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 방과 후 보육시설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및 운영기준은 시행규칙 제9조 및 제23조에 따른다.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구청장은 법 제36조 및 영 제24조제1항에 따라 보육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정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1. 보육시설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
2.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3. (생 략)
4. 보수교육 등 종사자 교육훈련 비용
5. (생 략)
6.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보육료 및 그 밖의 비용

제35조(비용의 보조 등) ① -----

----- 어린이집에-----

-----.

1. 어린이집의 설치, 증·개축 및 개·보수비용
2. 보육교직원 인건비
3. (현행과 같음)
4. ----- 보육교직원 -----

5. (현행과 같음)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시 비용

7. 방과 후 보육시설, 장애아 통합 보육시설의 설치비 및 운영비	7. 법 제27조에 따른 연장보육 어린이집,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의 설치비 및 운영비
8. 어린이 관련 행사, 보육종사자 관련 행사, 현장학습, 발표회 등 행사비용	8. ----- 보육교직원 -----
9. 보육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비	9. 보육교직원 -----
10. (생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구청장이 영유아 및 아동보육의 활성화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11. ----- 보육활성화 -----
② 구청장은 모든 보육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경우 그 지원 방법으로 수탁자, 보육시설장 또는 보육시설연합회 등 단체의 대표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② ----- 어린이집에 제1항에 따른 ----- -----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어린이집연합회 ----- -----.
③ 구청장은 비용을 지원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비용을 우선 지원 및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 ----- -----.
1. 보육시설 운영기준을 준수하	1. 어린이집 운영기준을 준수하

는 시설

2. (생 략)
3. 보육시설 평가인증을 받은 시설
4. (생 략)

제36조(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구청장은 보육시설 종사자 교육훈련 국내외 연수, 선진지 견학, 처우개선지원, 근무환경 개선 등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및 복리후생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을 보조 할 수 있다.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육시설의 설치 · 운영자 및 보육정보센터의 장 등에 대하여는 이미 교부한 비용 및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시설운영이 정지 · 폐지, 또는 취소된 경우
2. 사업의 목적 외 용도로 보조금을 사용하였을 때
3.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

는 기관

2. (현행과 같음)
3. 어린이집 평가인증을 받은 기관
4. (현행과 같음)

제36조(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등)

----- 보육교직원의 -----

----- 처우개선 지원 -----
----- 보육교직원 -----

-----.

제37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

----- 어린이집의 설치 · 운영자 및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등에게는 -----

-----.

1. 어린이집 운영 -----
2. ----- 목적 외 -----
3. 허위 또는 -----

제38조(정산보고)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보육시설장 및 단체대표자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 목적 안에서 성실하게 집행하고 그 집행 결과를 일정 기간 내에 증거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평가) 구청장은 보육서비스의 수준 향상을 위하여 보육시설 및 종사자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 모범보육시설 또는 우수 종사자에게 표창할 수 있으며, 평가기준 등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장 보 칙

제40조(준용규정) 영유아 보육에 대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령 등 관계 법령과 보건복지가족부 및 서울특별시 보육사업 지침을 준용한다.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정보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제13조제4항 관련)

1. 회원가입 및 사용료

제38조(정산보고) -----
----- 어린이집의 원장 및 단체대표자 -----

-----.

제39조(평가) -----
-----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
-- 모범어린이집 또는 우수 보육교직원 -----

-----.

제8장 보 칙

제40조(준용규정) -----

----- 「영유아보육법」 -----
----- 보건복지부 -----

--.

[별표]

서울특별시 마포구
유아종합지원센터 사용료 등
세부기준(제13조제4항 관련)

1. 사용료

구 분	용 도	단 위	상한액 (단위: 원)	비 고
회원 가입 시	도서 및 장난감대여 연회비	년	10,000	<input type="radio"/> 가입일 로부터 1 년 <input type="radio"/> 개인, 시설 공통
사용료	외국어교실 프로그램 이용	월	30,000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무료	
상담료	각종 치료 상담	회	30,000	

구 분	용 도	단 위	상한액 (단위: 원)	비 고
<삭 제>				
사용료	영유아놀이 프로그램	월	30,000	
	영유아플라자 학습체험실 이용		무료	
상담료	각종 치료 상담	회	30,000	

2. 검사료

구분	검사명	이용료	비고
영 유 아 용	사회정서발달선별검 사 (ASQ-SE)		
	표준화된발달선별검 사 (K-CDR-II)	무료	선별/발달 선별/발달 선별/발달
	발달장애선별검사 (DEP)		
	그림어휘력검사		
	문장완성검사-아동 용 (SCT)	10,000원	언어 성격/인성
	시지각능력측정검 사 (BGT)		
	투사적성격검사 (K-CAT)	20,000원	성격/인성
	언어발달선별검사 (PRES)		
	성격유형검사 (MMTIC)	30,000원	언어 성격/인성
	아동지능검사 (K-ABC)		
성 인 용	아동지능검사 (K-WISC III)	50,000원	지능 지능
	문장완성검사-성인 용 (SCT)	10,000원	성격/인성
	성격유형검사 (MBTI GS)	30,000원	성격/인성

2. 검사료

구분	검사명	이용료	비고
영 유 아 용	한국유아사회성기술검 사 (K-SSRSP)		
	아동발달선별검사 (K-CDI)	무료	선별/발달 선별/발달 선별/발달
	영아발달선별검사 (DEP)		
	영·유아언어발달검 사 (SELSI)		
	수용·표현어휘력검 사 (REVT)		
	취학전 아동의 수용언어 및 표현 언어 발달 척도 (PRES)		
	우리말조음·음운평가 (U-TAP)	30,000원	
	아동용 발음평가(APAC)		언어
	구문의미이해력검사		
	언어문제해결력검사		
	맥아더-베이츠의사소 통발달평가(K-M-B CDI)		
	파라다이스 유창성검 사(P-FA)		
	<삭 제>		

○ 비 고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자치구보육정보센터, 구민 문화체육센터, 어린이 영어도서관, 장난감 대여점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 등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한다.

○ 비 고

육아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마포구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

-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조례 개정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없음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복지교육국 가정복지과 김종임
연락처	02-3153-8903